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4. 12(월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3. 23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3. 23
- 라. 상정일자 : 2010. 4. 6.(제18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)
 - 제안설명 : 기획관리실장 정병일
 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인력 18명(한시정원, 행정안전부 2010년도 총액인건비 배정)에 대한 정원 증원
-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

나. 주요내용

-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 - 정원총수 : 6,221명
 - 집행기관의 정원 : 3,416명
 - 소방안전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2,200명

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509명
- 의회사무처의 정원 : 96명
-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(안 별표 3)
-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(안 별표 4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○ 동 조례안은

-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필요인력을 2010년도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한시정원으로 18명을 증원하고, 일반직 직급별 비율이 상이한 일부 직급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직급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임.

○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력 보장에 대하여

-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인천대공원간 29.3km의 사업구간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임.
-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인력증원 현황을 보면, '09년도에 군·구의 별도정원 과전 및 정원 증원 등 총 40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금번 한시정원 18명을 증원하면 건설공사의 전담인력 보장은 마무리된다 할 것임.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」에 의하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, 금번 증원하는 한시정원 18명의 존속기한(2010. 12. 31)에 대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2014년에 마무리 되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안전부와 한시정원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했음.

○ 일반직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 관련

- 조례상 정원과 현 인원 비율이 상이한 일부 직급에 대하여 현 인원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현재 일반직 5급이 429명으로 정원 423명에 6명이 초과한 사항으로 직급 비율을(17% → 18% 이내)조정하여 초과한 인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임.

(‘09. 3. 1 현재, 단위 : 명)

구 분		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·9급
조례상	정원	2,487	149	423	870	846	199
	비율	100%	6%이내	17%이내	35%이내	34%이내	8%이상
현 행	정원	2,487	132	429	826	837	263
	비율	100%	5.3%	17.2%	33.2%	33.7%	10.6%
증 감		-	△17	+6	△44	△9	+64

- 현재의 5급 인원 초과 발생시기 및 지난 제180회 임시회(‘10.1.24 ~ 2. 3)에서 본 사항을 개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시·도별 일반직 직급별 정원 비율

(2010. 3월말 현재 자치단체 조례 기준/국가직, 특정직 제외)

자치단체명	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 (8.9급)
전체평균	100.0%	5.8%	19.0%	35.1%	33.8%	6.3%
광역시 평균	100.0%	5.4%	16.9%	34.9%	34.6%	8.3%
도 평균	100.0%	6.1%	20.7%	35.2%	33.3%	4.7%
인 천	100.0%	6.0%	17.0%	35.0%	34.0%	8.0%
서 울	100.0%	5.0%	16.0%	36.0%	35.0%	8.0%
부 산	100.0%	5.0%	17.0%	35.0%	34.0%	9.0%
대 구	100.0%	4.6%	16.0%	33.0%	37.0%	9.4%
광 주	100.0%	6.0%	17.0%	35.0%	34.0%	8.0%
대 전	100.0%	6.0%	18.0%	36.0%	34.0%	6.0%
울 산	100.0%	5.5%	17.0%	34.0%	34.0%	9.5%
경 기	100.0%	6.5%	25.0%	36.0%	28.0%	4.5%
강 원	100.0%	7.0%	21.0%	36.0%	31.0%	5.0%
충 북	100.0%	7.0%	21.0%	35.0%	35.0%	2.0%
충 남	100.0%	6.0%	21.0%	35.0%	34.0%	4.0%
전 북	100.0%	7.0%	21.0%	37.0%	33.0%	2.0%
전 남	100.0%	6.0%	22.0%	36.0%	35.0%	1.0%
경 북	100.0%	6.0%	21.0%	36.0%	34.0%	3.0%
경 남	100.0%	6.0%	22.0%	36.0%	35.0%	1.0%
제 주	100.0%	3.5%	12.0%	30.0%	34.5%	20.0%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윤지상, 김소림, 이상철, 조남휘 위원

- 5급 초과인원 발생시기는?

정원조정 계획에 맞춰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했으며, 한시정원 기한도 행정안전부와 충분한 협의를 갖고 추진하였어야 했음.

- 특수지역 인원조정이 이번 정원조정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?

행정안전부에도 5도서팀이 신설될 계획으로 알고 있음, 정원조정에서 인원 확보가 되도록 검토바람.

- 서구 검단출장소장과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의향은?

< 답 변 >

○ 정병일 기획관리실장

- 금년초 보건복지국 분리와 서부여성회관 설립에 따라 사무관이 신설되어 초과인원이 발생한 것임. 한시정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은 필요한 경우라면 한시정원 연장이 가능함을 협의하였음.

- 특수지역 업무에 있어 일정부분 기획담당관실에서 책임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조직개편시에 여유가 되는 데로 보강할 것임.

- 소방본부장의 경우에 있어 현재 부산이 소방감이고 인천이 아직 소방준감으로서 문제제기를 해준다면 직급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윤지상, 김소림, 이상철, 조남휘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찬성 : 4명)

7. 기타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1.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6,203명”을 “6,22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호 중 “3,398명”을 “3,416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
비 율	6%이내	18%이내	35%이내	34%이내	7%이상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·10급
비 율	8%이내	22%이내	50%이내	20%이상

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16%이내	84%이상	10%이내	90%이상

4. 소방직공무원

구 분	소방정 이 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비 율	1%이내	3%이내	6%이내	9%이내	16%이내	31%이내	34%이상

5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4급 상 당 이 상	5급 상 당	6급 상 당	7급 상 당	8급 상 당
비 율	24%이내	18%이내	26%이내	26%이내	6%이상

※ 비 고 :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직급별	기관별	총계	본청 및 소속기관				의 회 사무처
			소계	본청	직속기관	경제자유 구역청	
총 계		6,221	6,125				96
정무직 소계		1	1				
일반직 소계		2,506	2,442				64
1급		1	1			1	
2급		1	1			1	
2급·3급		1					1
3급		19	19	10	2	4	3
3급·4급		1	1	1			
4급		109	107	58	6	16	27
5급 이하		2,374	2,313				61
별정직 소계		46	40				6
1급 상당		1	1	1			
4급 상당		9	3	1	2		6
5급 상당 이하		36	36				
연구직 소계		136	136				
연구관		20	20		16		4
연구사		116	116				
지도직 소계		23	23				
지도관		2	2		2		
지도사		21	21				
소방공무원 소계		2,200	2,200				
소방정		12	12	4	8		
소방령 이하		2,188	2,188				
교육공무원 소계		509	509				
총장		1	1		1		
교수·부교수· 조교수나 전임강사		414	414		414		
조교		94	94		94		
기능직 소계		800	774				26

[별표 4]

한 시 정 원(제4조제2항 관련)

구 분	직 종	직 급	정원	존속기한	비 고
총 계	계		67		
	일반직	3급	1		
		4급	4		
		5급이하	61		
기능직		1			
본 청	일반직	5급이하	4	2011.3.31	-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
	일반직	3급	1	2010.8.31	-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
		4급	4		
		5급이하	39		
기능직		1	2010.8.31		
사 업 소	일반직	5급이하	18	2010.12.31	- 도시철도2호선 건설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(이하 “지방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<u>6,203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3,398명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6,221명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3,416명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